

리스크관리규정

옐로우독 주식회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발생 가능성(이하 "리스크"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사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이 규정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관리"라 함은 리스크의 발생원천을 파악하고, 그 규모의 측정 및 적정성여부를 평가하여, 리스크를 회피·축소 또는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한다.
2. "리스크부문"이라 함은 회사가 관리하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를 말한다.
3. "사업부문"이라 함은 회사의 각 사업본부를 말한다.
4. "신용리스크"라 함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5. "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 환율, 주가, 기초상품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6. "금리리스크"라 함은 금리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7. "유동성리스크"라 함은 지급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부채의 만기도래시 원리금을 상환할 재무자원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비용으로만 재무자원이 조달 가능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8.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를 말한다.
9. "재무리스크"라 함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10. "Total Exposure (총위험 노출자산)"라 함은 특정 업체별 융자금, 지급보증, 유가증권, 예치금, 파생상품, 외환거래 등 직·간접적으로 신용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11. "리스크 한도"라 함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정한 최대손실금액 등을 말한다.
12. "손실한도"라 함은 발생한 손실과 발생가능한 손실의 합산금액을 일정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전 설정된 최대손실금액을 말한다.
13. "고위험자산·부문"이라 함은 경기변동, 과잉투자 등의 이유로 향후 산업전반의 침체가 예상되거나,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내재된 실질 리스크 파악이 어려운 자산·부문을 말한다.
14. "리스크관리책임자(CRO : Chief Risk Officer)"라 함은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 2 장 리스크 관리조직

제4조(리스크 관리 조직) 리스크 관리 조직은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부서로 구성한다.

제5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에 관한 최종적임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② 리스크 관리에 있어 이사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리스크 관리 기본계획
2.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3.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4.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적정여부 확인
5. 리스크관리책임자 임면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리스크관리위원회)

- ①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회사 경영상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 또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사결정 기구이다.
- ② 리스크 관리에 있어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의 이사회 부의안
 2. 리스크부문별, 사업부문별 리스크한도의 설정 및 배분
 3. 리스크관리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4. 고위험자산·부문 설정
 5. 고위험자산·부문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및 관리
 6. 차주별·그룹별·산업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및 관리
 7. 그룹별/산업별 한도부여 체계에 따라 산출한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
 8. 신상품 및 신제도의 리스크 심의·의결
 9.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적정여부
 10. 기타 이사회 또는 리스크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당연직위원으로한다.

- ③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결, 시행)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제 1 항의 의결사항은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1조(리스크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① 리스크관리책임자를 임면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책임자 임면시 관련 사실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및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석 발생시 지체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리스크관리책임자의 지위 및 임기) 회사는 부서장 중에서 리스크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리스크관리책임자의 역할)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임원에 대한 리스크관리 정보의 적시 제공
3. 그 밖의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리스크관리책임자의 독립성 확보)

- ① 회사는 리스크관리책임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책임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②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규정의 준수여부 점검업무 이외에 다음의 각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가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무, 부수업무 및 경영업무
 3. 그 밖에 이해상충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리스크관리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관련 법규에서 겸직을 금지한 업무
- ③ 리스크관리책임자가 제 2 항 각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리스크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리스크관리부서)

- ① 회사는 리스크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을 갖추어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리스크관리부서는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리스크관리책임자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지원 및 실무 처리를 총괄한다.
- ③ 리스크 관리에 있어 리스크관리부서의 역할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2.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3. 리스크부문별, 사업부문별 리스크한도의 설정·배분 및 모니터링
4. 종합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5. 기타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리스크 관리기준

제16조(리스크 관리 기본원칙) 리스크관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제의 확립
2. 리스크와 이익이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 리스크 수준 유지
3. 특정 부문에 과도한 리스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리스크 한도 설정 및 관리

제17조(리스크 인식)

- ① 리스크 인식이란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식별·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인식대상 리스크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신용리스크
 2. 시장리스크
 3. 금리리스크
 4. 유동성리스크
 5. 운영리스크
 6. Total Exposure

제18조(리스크 측정)

- ① 리스크의 측정이란 인식된 리스크에 대하여 적절한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값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리스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일상적인 시장변동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하여도 관리되어야 한다.

제19조(리스크 평가)

- ① 리스크의 평가란 인식 및 측정된 리스크에 대한 가치적 판단을 의미하며, 그 평가 결과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제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 ② 장기투자(1년이상)에 따른 리스크평가는 별첨1의 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행한다.

제20조(리스크 한도 설정 및 관리)

- ① 리스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 자산전체 및 리스크부문별 및 사업부문별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그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리스크에 대한 인식·측정·평가 결과 그 리스크가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위원회가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리스크 발생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그 영향이 중대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그 영향이 경미할 경우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제21조(보고) 리스크관리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각 호 내용이 포함된 종합리스크 관리 현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유 익스포저 현황
2. 자산건전성분류 및 총당금 적립현황
3. 리스크한도 운용 현황
4.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발생 현황
5. Total Exposure 관리 현황
6. 고위험자산.부문 익스포저 현황

- 7. 차주별.그룹별.산업별 익스포저 현황
- 8. 기타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리스크관리 관련 회사(임직원) 준수사항

제22조(임직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내규(이하 "법규"라 한다)를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수행시 준수절차) 회사는 임직원이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규 등으로 문서화하고 동 내규 등의 내용이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리스크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

- ①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임직원의 리스크관리규정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리스크관리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리스크관리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리스크관리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 위법·부당행위 발견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 ①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필요 시 정정 요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야 한다.
 - 1.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
 - 2.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 ②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무리스크 관리

제26조(리스크관리 계획)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주요정책, 리스크 종류별 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시행한다.

제27조(신용리스크 관리원칙)

- ①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위험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특정 부분 및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을 지양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통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여신심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조기 경보체제 등 적절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제28조(시장리스크 관리원칙)

- ① 금리·환율·주가변동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과 관련하여 경영상태와 업무능력을 감안 하여 적정수준의 리스크를 보유하여야 하며, 경영수지 개선의 수단으로 시장리스크를 확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시장리스크 관리는 회사가 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순간부터 이를 관리하며, 회사가 시장리스크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개별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금리리스크 관리원칙)

- ① 조달·운용 금리 구조의 조정과 다양한 위험 회피 수단을 이용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차의 변동을 적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조달, 운용 구조의 합치를 지향하며, 다양한 위험 회피 수단의 운용을 위한 금리리스크 분석 시스템 및 운용 인력의 전문성을 고양하도록 노력한다.

제30조(유동성리스크 관리원칙)

- ① 자금의 조달기간과 운용기간의 불일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시장 유동성 경색에 따른 지급불능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고 자산의 최적 배분에 기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유동성 위기발생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응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Total Exposure 관리)

- ① 특정 거래처나 특정부문에 대한 과도한 신용리스크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위험자산·부문별·그룹별·산업별 Total Exposure 한도를 설정·운용한다.
- ② 제 1 항과 관련한 각 Total Exposure 의 구체적 관리 대상 및 방법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여 운용한다.

제32조(규정의 하부 위임) 기타 재무리스크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운영리스크 관리

제33조(관리목적 및 대상)

- ① 운영리스크 관리는 경영관리, 사무처리, 전산시스템 운영, 대외 평판, 법률문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수정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운영리스크 부문의 관리대상은 경영관리리스크, 사무리스크, 법적리스크로 한다.
- ③ 운영리스크 부문의 인식대상은 업무절차, 사람,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한다.

제34조(관리원칙) 운영리스크의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성장성·안정성·수익성의 조화 추구
2. 각종 대내외 사고의 예방 주력
3.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강구
4. 각종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제35조(경영관리리스크)

- ① 경영관리리스크는 경영에 대한 판단오류, 경영전략 시행착오,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실패 등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관리한다.
- ② 경영전략 및 경영계획 대비 추진현황, 회사의 출자관리, 인사관리 및 운영, 기타 경영관리 리스크를 수반하는 업무 등을 경영관리리스크의 관리 대상으로 한다.

제36조(사무리스크)

- ① 사무리스크는 각종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직원의 사고 또는 부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관리한다.
- ② 어음·수표 및 중요증서 등의 실물관리에 관한 사항, 미정리 계정의 관리상황, 전산·감사 및 사고 예방대책 실시 현황, 사고취약 부문에 대한 인사제도 운용 관련 사항 등을 사무리스크의 관리 대상으로 한다.

제37조(법적리스크)

- ① 법적리스크는 회사 및 임직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부적절 또는 부정확한 법률자문이나 서류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고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관리한다.

- ② 규정 제·개정, 계약 등과 관련한 법률 검토에 관한 사항, 새로운 유형의 거래 또는 제도도입에 관한 사항, 직원의 업무관련 소송 진행 상황, 고문변호사 고문계약체결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적 리스크의 관리 대상으로 한다.

제38조(관리방안)

- ① 부서장은 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부터 초래되는 사건(이하 '손실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리스크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적절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위 제 1 항의 손실사건 자료 수집범위는 총 손실금액이 일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제6장 새로운 업무에 대한 리스크 검토

제39조(새로운 업무의 사전 리스크 검토)

- ① 새로운 업무를 취급 또는 도입시 해당 리스크 분석을 통해 새로운 업무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 ② 새로운 업무를 취급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리스크에 대한 자체 분석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리스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한 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분석내용에는 준법감시인의 법규 적합성, 회계처리(시스템 지원 등)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한 준법감시부서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전 3 항에 불구하고 기존 업무의 일부 변경 또는 리스크가 경감되는 경우 부서간 합의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상기 제 3 항에 의해 취급 또는 도입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6 년 10 월 28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첨 1.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리스크 평가

○ 평가방법

- 투자기간 1년이상 자산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이상 평가
- 핵심인력 전체가 참여하는 투자자산 평가회의를 통해 투자자산 평가(등급 분류)
- 투자기업현황 및 실적자료 매분기별 요청,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실사
- 분류 및 관리 방식: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 분류 및 자체 등급 관리

[투자자산 등급분류기준]^{주 1)}

기준등급	추정실적 달성률 (1차 평가기준)	피투자회사의 향후현금흐름 (2차 평가기준)	평가액 ^{주2)} 과 장부가 비교 (3차 평가기준)	사후관리 방안
AA	100%이상 실현	향후 2년내 (+)현금흐름 창출	평가액 상회, 평가액 하회하나 1년내 회복 가능	· 회사담당자의 일상적인 사후관리 - 월/분기/연도별 정기보고
A	75%이상 실현	향후 3년내 (+)현금흐름 창출	평가액이 하회, 2년내 회복 가능	- 사전동의사항 검토, 통지 수령 - 이사회 ·주총 참석
B	50%이상 실현 또는 50%이하 실현 (회복가능)	향후 4년내 (+)현금흐름 창출	평가액이 하회, 3년내 회복 가능	· 회사담당자 및 운용팀의 공동관리 - 성장에 필요한 경영지원
C	휴업 등 투자자산 회수 불가능 예상	(+)현금흐름 창출 불확실	평가액이 하회, 4년내 회복 가능	- 현금흐름의 지속적인 파악
D	파산, 폐업 등 투자자산 회수 불가능 확실	(-)현금흐름 지속 확실	평가액이 하회, 4년내 회복 불가능	· 운용팀의 집중관리 - 수시 사후관리 - 정상화를 위한 경영지원

주1) 상기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담당자와 대표펀드매니저가 협의 후 등급 책정을 판단함

주2) 평가액은 독립적인 제 3자 거래(신규증자, 구주매각, CB, BW 등), transaction multiples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산출하여 등급분류에 반영